

# 한·일 노인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 연구

조 윤 득\*

윤 기 혁\*\*

(e-mail : cyd7219@gmail.com • akqj1111@naver.com)

## < 목 차 >

- |                           |                         |
|---------------------------|-------------------------|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3.3 노인학대 신고의무           |
| 2. 연구방법                   | 3.4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체계    |
| 3. 한국·일본 노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 분석 | 3.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3.1 법률의 목적                | 3.6 피학대 노인과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
| 3.2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 4. 함의 및 제언              |

キーワード：老人虐待(Elderly Abuse), 老人福祉法(Elderly Welfare Law), 老人虐待防止法(Elderly Abuse Prevention Law), 養護者(Caregivers), 申告義務者(Mandatory Reporters)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한 이후로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에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12.7%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된 이래 2005년부터 2014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노인학대 상담 신고건수가 2005년 3,549건에서 2010년 7,503건, 2013년 10,162건, 2014년 10,569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 중

\* 제1저자 :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사회복지전공.

\*\* 교신저자 : 수영구노인복지관 관장, 사회복지전공.

2014년의 노인학대 사례 건수는 3,532건으로, 2010년의 노인학대 사례 건수 3,068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 이러한 노인학대의 실태를 바라볼 때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법률 규정을 도입한 이후에도 노인학대 방지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그리고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84.5%로 가장 많았고, 학대행위자는 아들 38.8%, 딸 12.3%, 배우자 11.9%, 며느리 4.7% 순으로 부양가족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 원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의 내적문제(분노, 고집스런 성격, 자신감 결여,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의 외적문제(이혼, 부부갈등, 부양부담 스트레스 외 등)이 18.6%, 부양부담 12.6%, 경제적 의존성 10.3%,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9.7%, 정신적 의존성 8.3% 기타 신체적 의존성, 과거 학대받은 경험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발생 지속기간 또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65.7%로 학대피해노인의 절반 이상이 장기간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

위와 같이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해 지속적으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무엇보다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부양자임에 주목을 해야 한다. 돌봄 과정에서 발생된 가족-환경적인 원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가족 지원차원의 학대예방 및 방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결과이다. 따라서 기존의 처벌위주의 학대방지 규정을 강화하여 부양자의 잠재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건호, 2008; 이보영, 박현식, 2010; 강동욱, 2015) 보다는 부양자의 부양부담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면서 학대방지와 가족 보호 차원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관련법의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가족 학대행위자의 노인학대 유발요인이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며, 가족보호 차원에서의 잠재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1) 노(老)-노(老) 학대란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것으로 주로 “고령자 부부간 배우자학대”, “고령자가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의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로 분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학대행위자 건수는 2010년 27.2%에서 2011년 30.2%, 2012년 34.1%, 2013년 34.3%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2014년도에 와서는 전체 학대행위자(3,876명)중 고령자 학대행위자(1,562명)가 무려 40.3%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정되어 있는 법률들 중에서 노인학대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노인복지법」이다. 그러나 동법에서 노인학대의 행위주체가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금지행위 유형들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김고은 외, 2012).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법 개정 혹은 입법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 방지에 관련해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정폭력관련 법률, 형사법, 정신보건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긴급복지지원법,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다양한 법률 체계 속에서 중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면서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학대 방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이건호, 2011: 채현탁, 백윤철, 2011: 김고은 외, 2012: 강동욱, 2015).

예컨대 가정폭력 상황에 대한 보호처분이나 임시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보는데 그 문제점이 있고 동법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노인학대를 규제하고 보호조치를 행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김고은 외, 2012). 실제로 이 법률의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법률 전문가인 이찬진(2002)도 “법률 제정 당시에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동 또는 노인인 경우까지도 망라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 법률은 본질적으로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 법률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이상희 외, 2008: 227).

한편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 법체계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서 법률의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한 데 반해, 일본에서는 배우자간 폭력에 대한 「배우자로 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V 방지법」)과 노인학대에 대한 관련법을 구분해서 제정함으로써 법률의 규율대상이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이상희 외, 2008: 227-228)

일본의 경우,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 이후, 가족 주수발자들에 의한 가정내 노인학대가 표면화 되고 사회문제화 되면서, 노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노인학대방지에 대한 특례법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학대방지법’으로 칭함)」은 「노인복지법」과 「개호보험법」과 연계해서 노인학대

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법에는 노인학대를 미연에 예방, 방지하고, 부양자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 부양자에 의한 노인학대의 방지 및 부양자에 대한 지원, 수사기관과의 협조와 지역사회연계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 방지, 노인학대 조사연구, 성년후견인 제도 등과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실천기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와 긴급전화 설치, 노인학대시 처벌규정 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개별 법령과 긴밀한 협력체계 및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법 체계와 관련하여 법률들의 특징과 내용들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학대 방지와 피해노인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 등 입법적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과 한국의 노인복지법에 입각한 노인학대의 정의, 신고의무, 대응체계, 학대예방을 위한 지원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여 고찰 한다<sup>2)</sup>. 특히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보았듯이 가족 부양과정에서 피해자-학대자 갈등, 부양부양감 등 개인-환경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가족에 의한 학대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가족지원을 통한 학대방지 예방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특히 부양자에 의한 학대방지와 학대행위자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법의 비교분석 내용은 노인학대의 목적과 구성,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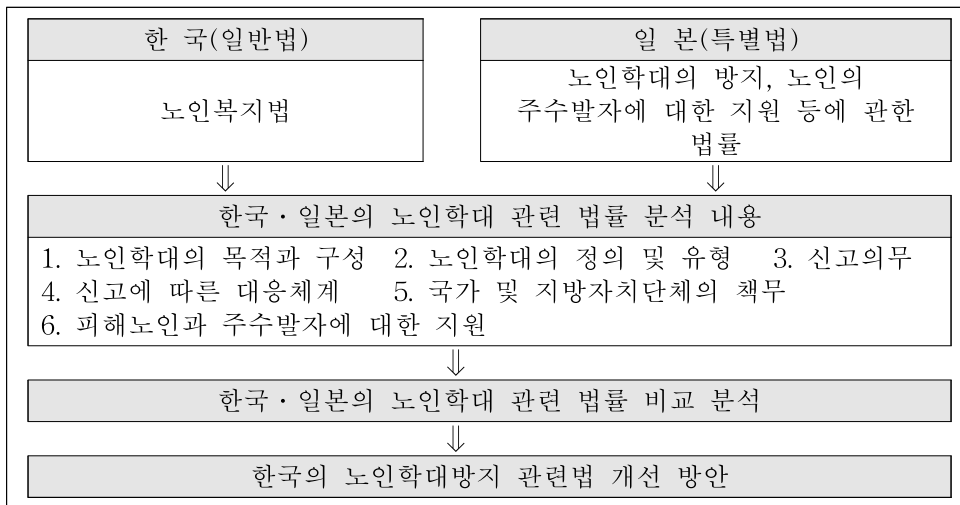
2) 본 연구에서 한국의 일반법(노인복지법)과 일본의 특별법(노인학대방지법)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은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령이 개별법령으로 제도화 되어 있지 않고, 노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간 노인학대 연구를 위해서는 두 법률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연구방법이다.

의 및 유형, 신고의무와 신고에 따른 대응체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피해노인과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으로 크게 6개 측면으로 세분화한 분석틀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선택한 것은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이고, 법체계와 내용에서 유사한 점들이 많으며, 같은 유교문화권 국가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이상희 외, 2008: 229)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의 관련법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법의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되어진 자료는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 시행된 노인학대 방지법 관련 법령 및 시행 내용을 근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노인학대방지 관련 법령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각종 간행물,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문헌조사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의 면담, 인터넷자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관련 법률의 경우 한국과 일본 양국간 사용하는 용어가 다소 차이가 있는 관계로 연구의 명확성과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본의 법령에 표기된 ‘고령자’는 ‘노인’으로 ‘양호자’는 ‘주수발자’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표 1참조).

<표 1> 한국·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 분석틀



### 3. 한국·일본 노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분석

#### 3.1. 법률의 목적

##### 1) 한국의 노인복지법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목적(제1조)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1년 6월에 제정 이후 여러 차례 전면 또는 일부개정을 거쳐 왔고, 2004년 1월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 노인복지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법률이 신설된 이후에도 수차례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왔으며, 2012년 10월에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조항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개정되었으며<sup>3)</sup>. 2015년 1월에 다시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노인학대 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간에 동행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현장 출동자에게 현장출입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질문권을 부여하여 노인학대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2015년 12월 29일에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를 위해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

3)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고 실적이 저조한 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대받는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된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제시된 노인학대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표2 참조).

<표 2> 노인복지법 내 노인학대방지 관련 조항 구성과 내용(한국)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2	노인학대 정의
	제6조	노인의 날 등(2016. 12. 30 시행)
	제6조2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2016. 12. 30 시행)
제4장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39조4	긴급전화의 설치
	제39조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7	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8	보조인의 선임 등
	제39조9	금지행위
	제39조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제39조11	조사 등
	제39조12	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15	노인학대 등의 통보(2016. 6. 30 시행)
	제39조16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39조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2016. 12. 30 시행)	
제39조18	위반사실의 공표(2016. 12. 30 시행)	
제7장 벌칙	제55조2~4	벌칙

## 2)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의 목적(제1조)은 “노인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상황에 있으며, 노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노인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서 노인학대방지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주수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지원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노인학대의 방지,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노인의 권리이익 옹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이 성립된 배경은 2000년도 개호보험법이 도입되면서, 개호매니지먼트 등 제 3자에 의한 가정상황이 파악되면서 가정 내 가족 주수발자에 의한 학대 문제가 표면화 되면서이다. 이에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에 의해 노인학대 관련 실태조사, 시범사업, 학회창설 등이 이어지면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드높아졌다. 이에 노인의 권리이익의 보호나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대를 받은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의 주수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 법안으로 2005년도에 일본 특별국회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노인학대의 방지에 관해 규정한 법안이 중의원후생노동위원회제출의 법률안으로서 2005년 10월 26일에 제출되었고, 그 후 10월 28일에 중의원본회의, 11월 1일에 참의원후생노동위원회, 같은 날 참의원본회의에서 전회일치로서 가결되어 성립되었고, 11월 9일에 공포되어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세계법제정보센터, 2007). 이미 일본에서는 아동학대방지법(2000년), DV방지법(가정폭력방지법: 2001년)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에 노인학대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불과 5년 안팎으로 3개의 학대방지법을 보유한 셈이다. 미국의 경우에 1974년도에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s Act: OAA)개정으로 노인학대방지연방법을 제정(1991년)하기까지 17년이 경과되었다.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강력한 연계와 더불어 높은 국민적 관심이 뒷받침된 법률임을 알 수 있다.

총칭 「노인학대의 방지, 노인의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표 3>과 같이 총 5장(부칙제외)으로 구성된다.

<표 3> 노인학대방지법 구성과 내용(일본)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연령기준, 학대행위유형), 중앙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
제2장.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 방지,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상담, 지도 및 조언,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에 대한 통보 등, 통보 등에 의한 조치 등, 피학대노인의 보호 시설 확보, 접근조사, 경찰서장에 대한 원조요청, 면회 제한, 주수발자의 지원, 업무에 전문성 있는 직원 확보, 연대협력체제, 사무의 위탁, 주지(周知: 해당부국 및 노인학대대응협력자) 도도부현의 원조 등
제3장. 양·개호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노인학대의 방지	양·개호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노인학대방지 등을 위한 조치, 양개호시설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에 관한 통보 등, 통보를 받은 경우의 조치, 공표
제4장. 잡칙	조사연구, 재산상의 부당거래에 의한 피해방지 등,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
제5장. 벌칙	
부칙	

법률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의 방지,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제3장 양·개호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노인학대의 방지, 제4장 잡칙, 제5장 벌칙으로 총 5장 30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의 목적(제1조)은 노인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중앙정부의 책무, 노인학대를 받은 노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치, 주수발자의 부담 경감시키는 등의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지원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노인학대의 방지,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해 이로써 노인의 권리이익의 옹호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 3) 법률의 목적 비교 분석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일반법으로 법률의 목적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권리옹호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에,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은 특별법으로 노인학대 방지 및 노인의 권리이익의 옹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명시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비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강동욱·문영희(2015)는 종전의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들이 오직 보호대상으로서의 노인의 복리증진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노인을 독립된 인격의 주체로 이해하고 노인의 생존권과 자유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노인중심으로 시각을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법의 목적이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통해 노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법률의 목적에 노인의 학대방지, 피학대 노인의 보호,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책무, 주수발자의 부담 경감 및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지원조치 등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노인학대를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대를 방지하고 주수발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적 보호의 근간을 유지하고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무게를 둔 점으로 처벌위주인 우리나라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sup>4)</sup>.

4) 한국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처벌위주의 벌칙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벌칙규정은 제55조2에서 57조까지이며, 제60조는 양벌규정, 제61조의2는 과태료 규정이다.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1.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5조의2)을, 2.노인에게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

## 3.2.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 1) 한국의 노인학대 정의 및 유형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2). 노인학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유형은 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첫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둘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셋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넷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다섯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2015년 12월 29일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정의와 별도로 제1조2(정의)에서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설 조항으로 포함하였다.”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형법」의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307조(명예훼손), 제324조(강요), 제350조(공갈) 제366조(재물손괴등) 등<sup>5)</sup>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지속적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5조의3). 그리고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와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5조의2).

-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

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2) 일본의 노인학대 정의 및 유형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 제2조 용어 정의에서는 “노인”은 65세 이상, “주수발자”는 현재 노인을 실제로 돌보는 사람으로 돌봄시설 종사자 이외의 사람, “노인학대”는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 및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 유형은 ①노인의 신체에 외상이 생기고, 혹은 생길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②노인을 쇠약하게 하는 심한 감식(減食) 혹은 장시간의 방치, 주수발자 이외의 동거인에 의한 ① ③④에 드는 행위와 같은 행위의 방치 등 양호를 현저하게 태만하는 것 ③ 노인에게 대한 두드러진 폭언 혹은 심하게 거절적인 대응과 그 외 노인에게 심한 심리적 외상을 가하는 언동을 하는 것 ④노인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것 혹은 노인에게 하여금 외설행위를 하게 하는 것 ⑤주수발자 혹은 노인의 친척이 해당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과 그 외 해당 노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노인학대의 정의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대행위를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 돌봄시설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 돌봄사업 업무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로 세분화하여, 주수발자뿐만 아니라 돌봄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까지 행위자의 특성별로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sup>6)</sup>.

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다.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주수발자’란 가정 내에서 부양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돌봄시설’이란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등 주로 노인이 입소하여 24시간 생활하는 7종류의 시설을 뜻한다. 또한 ‘돌봄시설 종사자’와 ‘돌봄사업 업무종사자’를 묶어 ‘돌봄시설 종사자 등’으로 칭한다.

### 3)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비교 분석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의 정의를 노인복지법 제1조2의 제4항에서,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는 제1조2의 제5항에서 규정하고, 제39조의9에서 신체적 폭행 등을 포함한 5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정의에서 ‘정서적 폭력’ 과 ‘정신적 폭력’이 나열되어 있으나 이 또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매년 정부에서 발행하는 ‘노인학대 실태보고서’에서는 노인학대 유형을 노인학대법의 정의와 다르게 ‘언어적 학대’와 ‘자기방임’을 노인학대의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어 일관적이지 못하다(강동욱·문정희, 2015).

한편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의 경우, ‘주수발자’를 현재 노인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학대 유형을 5가지로 신체적 학대를 비롯한 돌봄 방기·방임,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로 정하고, 이 중 앞의 4개는 주수발자에 의한 행위를 말하며, 경제적 학대는 주수발자를 포함한 친족, 그 외의 자에 의한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노인학대의 정의는 노인학대 행위가 잠재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현재 노인을 보살피고 있는 자인 주수발자로 정의함으로써 구체화 하고 있다. 이는 노인학대가 현재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친족 등에 의한 대부분 발생하고 있고, 학대행위자 또한 일·돌봄의 양립, 사회적 고립, 협력자 없이 주위의 무관심, 노-노 케어 등 개인-환경적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러한 주수발자에 대한 정의는 법의 취지와 같이 가족 보호 차원에서 1차적 주수발자라 할 수 있는 주수발자 지원을 전제하고 구체화한 정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대노인의 기준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거나 주수발자의 범위를 현재 돌보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64세 경우나 학대자가 이웃이나 고용주 등일 경우 등 법률의 정의에서 벗어날 때 법적용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해당 연령에 부합되지 않으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법률에 규정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 기준 연령 설정으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60세~64세에 연령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3. 노인학대 신고의무

#### 1) 한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

한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자<sup>7)</sup>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9조6),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하도록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등이다.

또한 벌칙 조항 중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는 비밀누설의 금지(제39조의12)와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 될 수 있음(보조인의 선임, 제39조의8)을 규정하고 있다.

7) 1.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2015년 12월 29일 개정).

## 2) 일본의 노인학대 신고의무

일본의 노인학대 신고의무는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와 돌봄시설 종사자들 등에 의한 노인학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에 관계되는 통보(제7조)는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노인을 발견한 사람은 해당 노인의 생명 혹은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이를 시정촌에 통보해야 한다(제7조1항)고, 신고 규정을 둔 반면에 노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촌의 통보는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2항)

다음으로 돌봄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노인학대의 통보(제21조1항)는 노인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돌봄시설 종사자는 신속하게 시정촌에 통보해야 하고(제21조제1항), 그 외 노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제21조제2항). 그리고 돌봄시설 종사자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은 노인은 시정촌에 신고할 수 있다(제21조제4항). 하지만 피해노인에 대한 통보와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대행위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제5조는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으로 돌봄시설, 병원, 보건소 그 외 노인의 복지에 업무상 관계가 있는 단체 및 돌봄시설 종사자 등, 의사, 보건사, 변호사 그 외 노인복지에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은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의 비밀누설죄의 규정과 그 외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3) 노인학대 신고의무 비교 분석

한국의 경우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12개 직업군 종사자가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에 일본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규정이 없고, 제7조에 피학대노인을 발견할 견한 사람은 누구나 노인학대를 신고하거나 노력해야 한다는 신고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4조에는 국민은 노인학대의 방지,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를 돕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노인학대의 방지,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조기발견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만 제39조의5 ①항에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행업무 중에서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 자료의 제작 및 보급과 ②항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행업무로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를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제5조에 노인복지 업무에 관계가 있는 단체 및 특정 직업군 종사자는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동조 2항에서는 1항에 규정하는 사람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계몽활동 및 노인학대를 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한 것이 주목해 볼만한 내용이다.

### 3.4.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체계

#### 1) 한국의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체계

한국의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체계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시 응급조치의 무로 현장조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사법경찰관리의 동행요청, 현장조사, 보호 조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제39조7).

둘째, 두기관의 동행의무로 제39조7항의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

셋째, 현장조사로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제39조7항②),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39조7항③).

그리고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9조7항④).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이 최근 법률 개정 시 신설되었다(제39조7항⑦).

넷째, 보호조치로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이 규정되어 있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1호), 현재 전국적으로 16개소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 2) 일본의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체계

일본의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체계는 시정촌의 조치사항, 거주시설 확보, 현장조사, 경찰서장에 대한 원조요청, 면회의 제한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통보 등을 받은 경우 시정촌의 조치사항(제9조)은 노인으로부터의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은 시정촌은 신속히 해당 노인의 안전 확인 및 그 외 해당통보 혹은 신고에 관계되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시정촌과 연대 협력하는 사람(이하 「노인학대 대응협력자」라고 한다)과 그 대응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촌은 통보 혹은 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노인학대에 의해 생명 혹은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인단기입소시설 등에 입소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심판의 청구를 하도록 한다(제9조 2항).

둘째, 거주시설 확보로 시정촌장은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를 받은 노인이 일정기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제10조4제1항제3호 혹은 제11조제1

항제1호 혹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있을 곳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제10조).

셋째, 현장조사(제11조)는 시정촌장은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에 의해 노인의 생명 혹은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직원과 그 외 노인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노인의 주소 혹은 거주지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혹은 질문을 시킬 수 있다(1항). 현장조사 시 해당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2항).

넷째, 경찰서장에 대한 원조요청(제12조)으로 시정촌장은 현장조사 시 직무집행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노인의 주소 혹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 대해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1항). 그리고 경찰서장은 원조요청을 받은 경우, 노인의 생명 혹은 신체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속히 소속 경찰관에게 동향의 직무집행을 원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그 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3항).

다섯째, 면회의 제한(제13조)으로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를 받은 노인이 (일시)보호조치 중일 경우 시정촌장 혹은 돌봄시설의 장은 노인의 보호관점에서 해당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를 한 주수발자에 대해 해당 노인과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 3)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체계 비교 분석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체계는 현장조사, 경찰관 동행, 보호조치, 현장조사 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의 제시 등 대체로 유사한 반면에 일본이 학대가해자를 대상으로 면회를 제한한 규정이 주요한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면회 제한 규정은 노인학대방지법 법률의 목적에 명시된 것처럼 피학대노인의 존엄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시정촌은 노인학대를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 대응협력자와 대응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시정촌 단위로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노인학대상담 대응창구를 개설하고 접수된 사례를 담당자 회의를 통해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학대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이성환, 2015).

### 3.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 한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제39조4).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7항⑦).

또한 국가는 지역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토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39조5)<sup>8)</sup>.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하반기에 1개소 더 운영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 2) 일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로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간의 연대강화, 민간단체의 지원 그리고 그 외 필요한 체제정비(제3조 1항), 전문적인 인재의 확보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직원연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제3조 2항). 그리고 노인학대에 관계되는 통보의무, 인권침해사건에 관계되는 구제제도 등에 대해 필요한 홍보 및 그 외 계몽활동(제3조 제3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정촌은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의 방지,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를 받은 노인의 보호 및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노인 개호지원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와 그 외 관계기관과의 연대협력체제를 정비해야 한다(제16조). 이 경우,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에 언제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8)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비교 분석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노인복지법 제3조(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엔 직접적으로 언급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긴급전화의 설치(제39조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제39조5),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제39조7항⑦)가 있다.

일본은 노인학대방지법 제3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의 방지, 노인학대를 받은 노인의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 및 적절한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관계성청 상호간, 그리고 그 외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연대강화, 민간단체의 지원 그리고 그 외 필요한 체제정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하겠다. 동조 2항에서는 노인학대의 방지 및 노인학대를 받은 노인의 보호 및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이 전문적 지식에 기초해 적절히 행해지도록 이러한 전문적인 인재의 확보 및 자질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항에서는 노인학대의 방지 및 노인학대를 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그 외 계몽활동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3.6. 피학대 노인과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 1) 한국의 피학대 노인과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노인복지법에 피학대 노인을 위한 지원 규정은 별도의 조항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노인복지법 제39조5 ②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과 동법 시행령 제29조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언급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39조5②항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9조의14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첫째,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둘째,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셋째, 지역사회 의 보

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피학대노인을 위한 보호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수발자를 위한 지원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학대가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이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 밖에 노인학대 사건 심리 시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9조의8).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는 최근에 신설된 제39조의16항(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15년 12월 29일 신설).

## 2) 일본의 피학대 노인과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제6조에 시정촌은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의 방지 및 주수발자에 의해 학대를 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 및 주수발자에 대하여 상담, 지도 및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정촌장은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를 받은 노인이 일정기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확보(제10조)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의 방지 및 노인학대를 받은 노인의 보호, 재산상의 부당거래에 의한 노인의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해서 성년후견제도가 폭넓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8조)

또한 제14조에서 주수발자의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첫째, 시정촌은 주수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수발자에 대하여 상담, 지도 및 조언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4조1). 둘째, 시정촌은 전항의 조치로써 주수발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양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노인이 단기간 양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있을 곳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제14조2).

## 3) 피학대 노인과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비교 분석

한국은 노인복지법에 피학대 노인과 주수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는 반면에 일본은 노인학대방지법에 피학대 노인과 주수발자를 위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일본은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부양부담의 감소와 가족기능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 예방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한국은 피학대 노인을 위해 노인학대 사건 심리 시에만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반면에 일본은 노인학대 방지 및 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비교 내용인 법률의 목적,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 신고의무,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체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피학대 노인에 대한 지원과 주수발자를 위한 지원 분석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한국·일본 노인학대 관련법률 비교분석 내용

구성		한국 노인복지법	일본 노인학대방지법
1. 법률의 목적		일반법으로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특별법으로 노인학대 방지 및 노인의 권리이익 옹호에 기여함을 목적
2.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노인</li> <li>- 신체적 학대, 정신적·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방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65세 이상 노인</li> <li>-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와 돌봄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li> <li>-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li> </ul>
3. 노인학대 신고의무	조기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기발견 규정 없음.</li> <li>- 다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 업무상 관계에 있는 자는 조기발견에 노력.</li> <li>-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계몽활동 및 노인보호를 위해 노력.</li> </ul>
	신고 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의무자 규정(12개 직업군)</li> <li>- 미신고시 300만원 과태료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민에게 신고의무 규정.</li> <li>- 벌칙 규정은 없음.</li> </ul>
4.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즉시 출동.</li> <li>- (동행요청)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서로 동행 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시정촌에 신고. 시정촌은 노인의 안전 확인 및 관계인에 대해 사실 확인하고, 노인학대 대응협력기관과 대책 협의.</li> <li>- (원조요청) 시정촌장은 현장조사 시 경찰서장에 원조를 요청</li> </ul>

	<p>청 할 수 있음.</p> <p>- (현장조사) 두 기관은 관계인에 대해 조사·질문할 수 있고,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p>	<p>할 수 있음.</p> <p>- (현장조사) 노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지역포괄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조사 또는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음.</p>
	<p>- (보호조치)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p>	<p>- (보호조치) 노인학대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노인단기시설 또는 거주시설에 보호, 성년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p>
	<p>-</p>	<p>- (면회의 제한) 주수발자에 의해 노인학대를 받은 노인이 (일시) 보호조치 중일 경우, 노인학대를 한 주수발자에 대해 해당 노인과 면회를 제한할 수 있음.</p>

구성	한국 노인복지법	일본 노인학대방지법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학대에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없음. 다만, 제3와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설치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을 규정.</li> <li>-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 수행 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 노인학대 방지, 노인학대를 받은 노인의 보호 및 적절한 주수발자 지원 위해 다양한 협력과 지원 체계 강구.</li> <li>- 노인학대 분야의 전문적인 인재의 확보 및 자질향상 도모를 위해 직원연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학대의 방지 및 노인학대를 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에 관계되는 통보의무 등 필요한 홍보 및 계몽활동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li> <li>- 시정촌은 주수발자에 의한 노인학대 방지 및 노인의 보호, 주수발자 지원을 위해 노인개호지원센터, 개호보험법의 지역포괄지원센터와 그 외 관계기관과의 연대협력체제를 정비해야 함.</li> </ul>
6. 피학대 노인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법에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음.</li> <li>다만, 노인보호전문기관 수행 업무에 피학대 노인에 대한 지원을 언급함. 첫째,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둘째,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li> <li>- (보조인의 선임) 노인학대 사건 심리 시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학대방지법엔 별도의 지원 규정이 있음.</li> <li>- (상담, 지도, 조언) 시정촌은 피해학대노인 및 주수발자에 대해 상담, 지도 및 조언을 함.</li> <li>- 시정촌은 노인학대로 인해 거주지가 필요한 경우 노인단기보호시설 또는 거주시설 확보를 위한 조치.</li> <li>- (성년후견인) 노인학대 방지 및 노인보호, 재산상의 부당거래에 의한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해 마련.</li> </ul>
7. 주수발자를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촌은 주수발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수발자에 대한 상담, 지도 및 조언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li> <li>- 주수발자의 심신 상태에 비추어 그 주수발 부담의 경감을 피하기 위해 긴급을 요할 경우 노인을 단기간 보호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함.</li> </ul>

## 4. 함의 및 제언

일본은 가정폭력과 노인학대를 구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가정폭력과 노인학대의 개념이 중첩됨으로써 법체계의 혼란이 야기되고 법률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들을 비교해보면 법률 자체가 독립법률인 만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은 주수발자에 의한 학대 방지를 위한 지원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대행위 주수발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않은 등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주수발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과 민간에 의한 사적 보호의 근간을 유지하고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무게를 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사전에 노인학대 행위를 차단해야 하나 이것만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노인학대가 가족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노인학대 행위자 또한 보살핌이나 치료적 개입이 취약한 개인-환경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가족 부양자일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방지법과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노인 주수발자에 대한 잠재적인 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법제화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노인복지법 내 노인학대 관련 법률과의 비교를 통하여 본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의 특징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인 노인학대방지법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목적에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국가의 책무, 피해학대노인 보호,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노인학대의 단속과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학대를 방지하고 주수발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다.

둘째, 노인학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먼저, 학대행위와 기준연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와 함께 주수발자에 의한 학대와 돌봄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까지 행위자 특성별로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

고 있다. 또한 주수발자에 관하여 현재 노인을 돌보고 있는 자로 구체화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조항을 밀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65세 이상이라는 기준연령이나 주수발자에 대한 한정적인 범위 설정은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주수발자 지원 등에 있어 일부 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판단기준, 노인의 범위, 주수발자의 범위 등에 대한 노인학대 정의에 대한 애매한 점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시정촌을 중심으로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조기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학대방지법에서는 학대를 받은 노인과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시정촌이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개정개호보험법에서도 시정촌에 대해 지역지원사업(포괄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에 대한 학대방지 및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과 그 외 노인의 권리 옹호를 위해 필요한 원조 사업’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시정촌은 지역포괄지원센터 등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노인학대에 대한 사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지역에서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중핵기관으로서 자리 잡도록 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4).

또한 시정촌은 노인학대와 주수발자 지원에 관한 상담 실시, 통보, 신고 수리, 상담자에 대한 조언, 지도 등을 실시하는 부문을 명확히 하고 창구를 설치하여 주민과 관계기관에 대해 폭넓게 주지토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후생노동성노건국이 작성한 ‘노인학대에 관한 매뉴얼’에서 지자체에 대해 민생위원, 자치회, 자원봉사 등 비공식적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조기발견·지킴 지지망’, 케어매니저, 서비스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복지 지지망’, 의료기관, 권리옹호단체, 경찰 등의 ‘관계전문기관개입지원 지지망’의 3층구조의 지지망 구축을 장려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06).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어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사업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경우 노인과 가족의 생활 장면에서 가장 밀접한 지역차원에서 민간과 공적인 자원이 연계되어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노인학대가 심각하게 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 대응 체계를 구성한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수발자 지원의 복지법적 성격이 강한 법률이다. 노인학대방지법이 노인학대방지와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을 범명에서 표방하듯이 이 법이 학대자를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가족 등의 주수발자를 지원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적인 성격이 강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주수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의 단기간 입소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제14조 2) 등은 간헐적이지만 주수발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지지, 지원하는 능동적인 예방책이다. 따라서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이 학대예방책으로서 법률에 명기된 것은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학대가 범죄다’라는 의식으로 자칫 주수발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단순히 징계하는데 법률에 역점을 둔다면, 주된 학대행위자가 가족인 상황 하에서 학대원인 해소를 통한 사적 보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배제되기 쉬울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방지의 법률 구성에 주수발자의 지원이나 예방활동, 시설 간의 연계, 지역의 노인학대보호망 구축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고 노인과 주수발자에 대한 지원을 개시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되도록 초기 단계에서 노인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정촌과 지역포괄지원센터 등 복지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네트워크 등의 보호층을 강화함으로써 노인과 주수발자 등 원가족 보호를 지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섯째, 재산피해방지에 대해 시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점은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조항(제2조4)에서 재산의 부당처분이나 제3자의 부당 갈취 등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성년후견제도와 유기적인 이용촉진을 통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금 갈취 및 노인대상 부당 상행위 등을 비롯하여 재산상의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관련 법제도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책들은 노인의 경제적 권익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한일 노인학대관련 법률 비교를 통한 일본 노인학대법의 시사점을 참고로 우리나라 노인학대 관련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학대 방지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현행 법령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에서 가정폭력방지법(DV방지법: 2001년)과 노인학대방지법(2005년)이 각각 제정된 것처럼, 한국도 가칭 ‘노인학대방지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이건호, 2011: 박영수, 조영섭, 2014)하고, 여기에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 및 보호절차, 신고의무, 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여 노인학대 예

방 및 대응책 마련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연령기준, 노인학대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2015)에는 노인학대서비스 제공 대상을 만 60세로 하고 있는 반면, 최근 법 개정 시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과 지침이 상이함에 따라 법 적용 시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60세~64세의 연령층은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는 연령층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 또는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학대의 정의에 언급되어 있는 정신적 및 정서적 학대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경제적 학대의 발견 및 개입에 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김경호, 2008). 한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여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신속 개입 등을 통해 학대의 심각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학대 상황에 대해 간과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여 노인인권이나 학대 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넷째,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만 둘 것이 아니라, 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행위자(가해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도,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처리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예방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 자원과의 유기적인 지지망을 구축하거나, 돌봄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돌봄 서비스 연결시키는 등으로 부양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의 보완 또는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코자 한다. 첫째, 노인학대 기준연령과 주수발자의 범위를 한정된 것과 둘째, 노인학대 신고의무 셋째, 신고의무자에 대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대노인의 기준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거나 주수발자의 범위를 현재 돌보는 사람으로 규정한 노인학대방지법은 법적용 단

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법률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에서 노인을 발견한 사람은 해당 노인의 생명 혹은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경미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중대한 위험에 대한 기준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신고가 늦어지거나 지연되어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노인학대를 신고하거나 노력해야 한다는 신고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벌칙 조항이 없음으로 자칫 선언적인 의미로 남을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은 제언한다.

### 【참고문헌】

- 강동욱(2015)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15(2), pp.473-495.
- 강동욱·문영희(2015)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 『법학논총』 32(2), pp.23-46.
- 김경호(2008)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주요쟁점 고찰」 『법과 정책연구』 8(2), pp.651-669.
- 김고은·박성애·곽인철(2012) 「경남의 노인학대 예방방안」.
- 박영수·조용섭(2014) 「노인학대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3(3), pp.109-136.
- 보건복지부(2015) 「2015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 \_\_\_\_\_ (2015)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5.6.15)」.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5)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 이건호(2008) 『고령화사회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 『경찰법연구』 6(2), pp.239-269.
- \_\_\_\_\_ (2011) 「노인학대 피해의 대처 및 예방을 위한 전략에 대한 고찰」 『경찰법연구』 9(2), pp.221-248.
- 이보영·박현식(2010) 「노인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법학연구』 40, pp.263-286.
- 이상희·하승수·이혜원(2008) 「한·일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 연구」 『아동과 권리』 12(3), pp.225-249.
- 이성환(2015) 「가족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일본의 고령자학대 방지 정책」 『복지이슈』 24. 18. 서울복지재단.

채현탁·백운철(2011) 「헌법상 노인의 사회보장권 강화를 위한 노인학대 관련 법률의 합리화 방안」 『세계헌법연구』 17(2), pp.131-153.

세계법제정보센터(2007) 「고령자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JP/trend/1606?astSeq=159>)

厚生労働省(2005)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_\_\_\_\_ (2006) 「市町村・都道府県における高齢者虐待・養護者支援の対応について」.

(<http://www.mhlw.go.jp/topics/kaigo/boushi/060424/>)

\_\_\_\_\_ (2014)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など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対応の強化について」.

(<http://www.mhlw.go.jp/file/04-Houdouhappyou-12304500-Roukenkyoku-Ninchishou-gyakutaiboushitaikusuishinshitsu/0000073466.pdf>)

논문 투고 일자 : 2016.02.29.

논문 심사 일자 : 2016.04.18.

게재 확정 일자 : 2016.04.28.

---

**<要旨>**

---

## 日韓の高齢者虐待関連法に関する比較研究

趙允得・尹基赫

本研究の目的は、日本の「高齢者虐待防止法」と韓国の「老人福祉法」を比較することによって我が国の高齢者に対する虐待の防止および予防に関する示唆点を得るためである。本研究では国内法の中で高齢者に対する虐待の防止および予防について最も具体的に明示している老人福祉法を中心に、高齢者虐待関連法の改善の方向性を提示する。

研究結果は次の通りである。一：高齢者に対する虐待の防止に関する別の章を新設し、現行法より更に具体的で実効性の高い対応策を設け、高齢者に対する虐待の予防および再発を防止するよう保護者を支援する規定を設けるべきである。二：高齢者に対する虐待の予防と対応のために年齢の基準、高齢者虐待の定義を具体的に明示すべきである。三：高齢者虐待の通報の義務のある者の範囲を拡大すべきである。国民に対する広報を通じて通報に対する意識と高齢者の権利や人権保護、虐待防止に関する市民意識を高めるべきである。四：高齢者に対する虐待行為に処罰で対応するのではなく、虐待行為を行った者に対する指導および支援のための法的な根拠規定を設けるべきである。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s relates to elderly abuse prevention of Japan and Korea.

Yeun-Duk, Jo · Ki-Hyok, Youn

The present study aimed at getting some implications for prevention of elder abuse in Korea by comparing the elder abuse prevention law of Japan and the law of elders' welfare of Korea. This paper tries to come up with ways to improve laws related to elder abuse, focusing on the law of elders' welfare that among domestic laws, states most specifically precautions and prevention of elder abuse. First, there should be countermeasures more specific and effective than current legislations, by a new separate stipulation written on prevention of elder abuse so that it could support the guardian in preventing elder abuse and recurrence of abuse cases. Second, there should be specific standard of age and the definition of elder abuse for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elder abuse. Third, the scope of the persons bound in duty to give the notification of elder abuse should be expanded. National campaign should take initiative in cultivating the sense of duty to report elder abuse to the government agencies in charge as well as civic consciousness regarding protection of elders' rights and prevention of abuse. Fourth,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learly defined. Fifth, there should be instruction and support for the actual perpetrator of abuse (the abuser).